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9명(별첨)
2. 공고기간 : 2019. 09. 16. ~ 09. 30.(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내용으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033-639-2727,2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9. 16.

속 초 시 장

